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일시 | 2021년 4월 12일(월), 14:00~17: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PROGRAM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 일 시 : 2021년 4월 12일(월), 14:00~17: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주 제 :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m)	<인사말 및 축사> ▪ 인사말 :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축 사 : 송기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기념촬영	▪ <사회> 김명기 국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4:30~15:10 (40m)	<주제발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0~15:30 (20m)	휴식시간	
15:30~17:30 (2h)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이동형 원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진아 교수 (사법연수원) ▪ 김민규 교육이사 (대한변호사협회) ▪ 이가영 논설위원 (중앙일보) ▪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 ▪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 강솔이 학생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이경주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 안효질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30	폐 회	

Contents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1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축 사	5
송기헌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9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토론 1] 이동형 원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9
[토론 2] 정진아 교수 (사법연수원)	45
[토론 3] 김민규 교육이사 (대한변호사협회)	53
[토론 4] 이가영 논설위원 (중앙일보)	61
[토론 5]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	65
[토론 6]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69
[토론 7] 강솔이 학생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75
[토론 8] 이경주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5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인사말 및 축사

인사말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인 사 말

한기정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기정입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송기현 의원님, 25개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자와 발제·토론자를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의 전환은 지난 12년간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공적 기관과 기업들, 나아가 일반 국민들도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용이해졌습니다. 전통적인 송무 이외의 다양하고 폭넓은 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의 전환에 맞게 변호사시험 제도가 설계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유리된 채 학생들로 하여금 수험 교육을 선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출제오류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이 여전히 사고력보다는 지식암기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과 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전원협의회도 변호사시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4.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 기 정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인사말 및 축사

축사

송기헌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축 사

송기현 |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법을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하여 힘 써주신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님, 발제와 사회를 맡아주신 서울대 법전문원 천경훈 교수님과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탄생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제도가 시행 된지 어느덧 12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법전문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0여년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법조계 미래를 위해 토론의 장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제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수험의 구성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식, 강의 내용, 학문의 질과 난이도 등 법조인 양성을 위한 모든 전반적인 방향 및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로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재학생들이 법학 공부의 상당부분을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는 현상과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은 기피해 수준 높은 강의들이 폐강되는 안타까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독단적 문제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교육부, 법전문원 그리고 국회가 협력해 교육 체계 및 수험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면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부의 정책을

감사하며 때론 크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심포지엄의 토론과 발표를 통해 법전문-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이 증진되는 초석이 되길 희망합니다. 저 또한 전문가 여러분의 제언을 경청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조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땀방울이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국회의원 송기현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주제발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천경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발제문

천경훈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법전원을 통한 법학교육의 목적
- III. 현행 변호사시험의 내용
- IV. 현행 변호사시험의 성과
- V.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 VI.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 VII. 요약 및 결론

I 문제의 제기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체제의 출범 이후 선발 과정의 공정성, 등록금 액수와 장학금 제도의 적정성, 졸업생들의 업무 능력, 적절한 합격률 수준 등에 대해 다양한 비판과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법전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학습하여야 하고 그렇게 교육·학습하고 있는지, 즉 교육·학습의 내용·방식과 그 질에 관한 문제임
- 현실적으로 법전원 교육의 내용, 방식,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생적 요인은 변호사시험임
 - 법전원을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하여 법률가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修學의 의미가 미미해지므로,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내용, 형식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습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실제로 대부분의 법전원에서 변호사시험 과목 이외의 과목은 학생들이 거의 수강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과목의 경우에도 ‘수험적합성’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여, 많은 강의들이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강조하기보다는 판례의 요약전달에 치중하게 됨

-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학생들이 학기 중 심지어 입학 전부터 학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에 법학 공부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기도 함 ⇨ 학문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법전문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법전문에서의 법학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변호사시험의 성과/부작용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발표되었으나(참고문헌 목록 참조), 적절한 합격자 수 또는 신규 변호사 수에 치중한 거시적 연구이거나, 개별 과목의 문제 스타일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가 많았음
- 이 발표에서는 2021년 제10회까지 시행된 변호사시험이 법전문에서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내기 위해 변호사시험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함
 - 방법론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분석과 제안을 하기보다는 선행연구¹⁾ 및 제안들을 두루 참조하고, 개인적 경험²⁾에도 많이 의지하였음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중요한 쟁점이나 이것을 주된 쟁점으로 삼을 경우 다른 중요한 논의들이 묻히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발표에서는 합격률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기로 함
- 이를 위해 우선 법전문을 통한 법학교육의 목적을 재점검하고(II),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일별한 후(III), 그 긍정적 성과(IV)와 부정적 문제점(V)을 살펴보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함(VI)



법전문을 통한 법학교육의 목적

1. 제도 도입의 경과와 취지

- 사법개혁의 대장정: 1993년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 2004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위 사법개혁 과정에서 당시 법조인 양성제도의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됨

1) 발표자의 글인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2017을 많이 참조하되 그 뒤의 데이터를 반영하였음

2) 엄밀한 계량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발표자가 로펌의 기업자문 변호사와 교수로서 각각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 한국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학 경험, 미국 로스쿨 수학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경험, 몇몇 외국 대학에서의 연구 및 교류 경험, 재직 중인 서울대 법전문에서 학생부원장과 교무부원장으로서 학생지도 및 학사행정을 담당할 개인적 경험 등에 많이 의지하였음

- 대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이 단절되어 법학교육이 형해화하고 법과대학이 고시학원화함 (학생들이 법학을 주로 학원에서 배움)
 -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에 빠져 있는 폐해가 발생함
 - 법조인들끼리의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을 형성함
 - 국제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종의 反命題로서 추진됨

2. 법학전문대학원법의 교육이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전문법) 제2조의 교육이념은 다음과 같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이는 교양적 측면, 가치관적 측면, 윤리적 측면, 전문가적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음
-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라는 **교양적 측면**은 종래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지식인에게 요구되는 교양과 인문적 소양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년간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
 - 다만 사람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면 ‘교양 및 인성’은 대학원 단계에서 새삼스럽게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중등교육을 거쳐 학부 졸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요소임
 - 즉 이 요소는 고등교육을 마친 학부 졸업생을 상대로 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을 교육하기로 결단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압축된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교양 및 인성적 측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이라는 **가치관적 측면**은 법률가로서 가져야 할 근본적인 직업적 신념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실정법에 대한 법리 학습과 아울러, 법철학·법제사 등의 기초법학을 통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의 기회, 리걸클리닉·법률봉사 등을 통한 예비법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발견 등이 중요할 것임
- “건전한 직업윤리관”이라는 **윤리적 측면**을 위해 법조윤리가 법정 필수과목으로 부과되어 있고 법조윤리 시험에 통과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나, 그보다는 법전문 3년 과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직업윤리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고, 스스로 이를 고민하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좋은 역할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라는 **전문지식적 측면**은 법률가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 현재 법전원에서의 교육은 거의 이 요소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다시 다음 요소들로 분석해 볼 수 있음
 -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히 이해하고 요약/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 사실로부터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 법리, 즉 조문, 학설, 판례에 대한 지식
 - 법리를 조사하고 기존 법리가 없을 때 새로운 법리를 유추하는 능력
 - 법리를 사실에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이고 건전한 추리력
 - 고객/당사자의 말을 잘 듣고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소통능력
 - 이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 원만히 이루어내는 리더십 내지 협동심

- 이러한 교육이념의 달성을 위해 법전원 출범 초기에는 우수한 교원 확보, 교재 및 교과과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
 - 그러나 12년의 운영 결과 법전원 교육을 좌우하는 압도적인 변수는 교원, 교재, 교과과정이 아니라 변호사시험이고, 이는 교양적, 윤리적, 가치관적 측면 뿐 아니라 전문지식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 변호사시험의 내용

1. 현행 변호사시험의 형식과 범위

- 현행 변호사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법의 네 영역에서 기록형, 선택형, 사례형의 3가지 유형(선택법은 사례형만 출제됨)으로 실시됨
- 사법시험 1차에서 평가했던 선택형, 사법시험 2차에서 평가했던 사례형,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에서 평가했던 기록형을 한꺼번에 나흘 동안 치르는 형태

〈표 1〉 변호사시험 과목별 배점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선택형	100	100	175	-
사례형	200	200	350	160
기록형	100	100	175	-
계	400	400	700	160
총계	1,660			

〈표 2〉 변호사시험 시행 일정³⁾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제1일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제2일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제3일	휴 식 일				
제4일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제5일	민사법·선택법	10:00-13:30	민사법 사례형 (350점)	16:00-18:00	선택법 사례형 (160점)

- 공법에서는 헌법과 행정법을, 형사법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민사법에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수표법, 보험법)을 다룸
- 선택과목으로는 현재 국제법, 국제거래법, 세법, 노동법, 환경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등 7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음

〈표 3〉 선택법과목 출제범위⁴⁾

과 목	출 제 범 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사법시험보다 시험 범위는 오히려 다소 늘어났음
 - 종래 사법시험 2차 시험의 7개 과목(민법, 헌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사법시험에서는 1차 시험에서 선택형으로만 출제되었던 선택법이 사례형으로 출제됨
 - 사법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았으나 기록형의 소재가 되는 민사집행법, 형사특별법, 민사특별법, 개별행정법령 등이 출제범위에 들어갔고, 특히 형사특별법⁵⁾의 수험상 중요성이 매우 커졌음

3)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에 따른 것으로서 제1회 때부터 큰 변동 없이 실시되고 있음

4) 법무부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참조 (제1회 시험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2. 다른 주요국 변호사시험과의 비교

-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인 MBE, 사례형인 MEE, 기록형인 MPT로 구성됨 (셋 다 전주 공통형 시험임)
 - MBE는 6시간 동안 200개의 오지선다형 문제 (헌법, 형법, 계약법, 재산법, 불법행위법, 증거법이 혼재됨)
 - MEE는 3시간 동안 6개의 사례형 문제 (위 6과목에 더해 민사소송법, 상속법, 친족법, 신탁법, 회사법, 통일상법전 등이 주로 출제되나 출제 가능한 범위는 훨씬 넓음) → 한국/일본보다 훨씬 단순하지만, 쟁점제시형이 아니라 쟁점발견형임 (설문이 “Explain”)
 - MPT는 3시간 동안 2개의 기록형 문제
 - 그 외에 전주 공통 법조윤리 시험(MPRE)에 합격하고, 뉴욕주법에 대한 온라인코스를 이수하고 (NYLC: New York Law Course), 뉴욕주법에 관한 온라인 오픈북 시험을 통과해야 함(NYLE: New York Law Exam)
- 일본 사법시험의 경우 단답형과 논문형으로 구성됨
 - 단답형은 헌법 50점(약 20문제, 50분), 형법 50점(약 20문제, 50분), 민법 75점(약 37문제, 75분)으로 구성되는 오지선다형임 (합계 175점, 175분)
 - 논문형은 사례형과 기록형의 중간 형태로서, 공법계과목 200점(2문제, 4시간), 민사계과목 300점(3문제, 6시간), 형사계과목 200점(2문제, 4시간), 선택과목 100점(2문제, 3시간)으로 이루어짐 (합계 800점, 17시간)
 - 여기서 선택과목은 도산법, 조세법, 경제법, 지적재산법, 노동법, 환경법, 국제관계법(공법계), 국제관계법(사법계) 중 선택함 ⇨ 한국의 선택법 과목 7개에 도산법이 더해진 것임
 - 시험은 4일간 치러지며(사이에 휴식일 1일), 첫 사흘은 논문식 시험을 치르고(제1일 7시간, 제2일 6시간, 제3일 4시간) 마지막 날에 단답식(선택형) 시험을 치름(175분)

〈표 4〉 한/미/일 변호사시험 비교

	한국	일본	미국 뉴욕주
시험기간	4일	4일	2일
소요시간	20시간 50분	19시간 55분	12시간
선택형	155문제 (4시간 20분)	75~80문제 (2시간 55분)	200문제 (6시간)
사례형	9문제 (9시간 30분)	9문제 (17시간)	6문제 (3시간)
기록형	3과목 (7시간)	없음 (사례형에 통합)	2문제 (3시간)

5)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등이 그 예임.

3. 현행 변호사시험의 유형별 검토

(1) 선택형

- 선택형은 다섯 개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출제되며, 그 질문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옳은 진술 또는 틀린 진술을 하나 고르게 하는 단순택일형 (“다음 중 옳은/잘못된 것은?”)
 - 여러 개의 진술을 나열하고 그중에서 옳은 것들의 조합 또는 틀린 것들의 조합을 고르게 하는 OX조합형 (“다음 중 옳은/잘못된 진술끼리 묶인 것은?”)
 - 복수의 진술이 기재된 묶음을 두 개 제시하고 각 묶음 내에서 서로 관련된 진술을 고르도록 하는 지문조합형 (“<보기1>과 <보기2>가 관계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⁶⁾
- 지금까지 출제된 선택형 문제들은 과목 및 문제유형에 관계없이 판례나 법조문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특히 단순택일형, OX조합형 등은 결국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진술의 출처는 대부분 조문 또는 판례(판결요지)이고, 그중에서도 법조문보다는 판례(판결요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또한 정답에 관한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문제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음⁷⁾
- 즉 아래 예시와 같이, 어떤 사실관계에서의 해결이나 추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판결요지를 변형한 진술 다섯 개를 제시하고 그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는 것임 ⇨ 주로 판결요지에서 ‘있다/없다’를 바꾸거나 ‘허용된다/허용되지 않는다’를 바꿔서 옳은/잘못된 진술을 생성함
- 해당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법률가도 앞뒤 정황이나 단서/보완 없이 이 진술만을 읽어서는 OX를 쉽게 판별하기 어려움 ⇨ 즉 이 질문이 묻는 것은 판결요지의 암기 여부이고 학생들은 그에 정확히 대응하여 수험준비를 하게 됨

[문제 예: 변시 제6회 민사법 1책형 60번]

소송상 상계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⁸⁾
- ② 소송상 상계 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6) 지문조합형에서 두 묶음의 관계는 주장-논거, 법리-예시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7) 간혹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이라는 지시문구가 없는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판례의 태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예: “다음 중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사실상 모든 문제에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

8)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 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⁹⁾

③ 甲이 乙을 피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항소 제기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乙이 甲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그 소송에서 위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다.¹⁰⁾

④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¹¹⁾

⑤ 피고가 소송상 상계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께 주장한 경우, 법원은 상계 항변을 먼저 판단할 수 있다.¹²⁾

(2) 사례형

- 사례형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1500점 중 절반인 750점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음
- 실제 법실무의 기본 구조는 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사례형이야말로 법률가의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과거 사법시험의 7법 체제가 아니라 3법 체제로 출제과목을 변경한 데에는 실체법과 절차법, 헌법과 행정법, 민법과 상법 등 과목 간 융합출제가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었고, 특히 사례형이 그와 같은 융합출제의 모범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변호사시험 단계에서 과연 무리해서 융합출제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실제로 그것이 달성되고 있는지는 더욱 의문임
 - 즉 여러 과목의 여러 쟁점이 외형상 모여 있을 뿐 실제로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개별 과목을 테스트하는 것만 못한 경우도 많음
 - 오히려 설문 단위로 ‘융합’의 외관을 추구하다보니, 여러 분야의 법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수의 ‘소문항’이 등장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지문도 불필요하게 길어짐 (<표 5>의 노란색 부분 비교)

9)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10)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피고는 위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 이러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11)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12)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상계항변 당시 채무자인 피고에게 수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표 5〉 변호사시험 회차별 글자 수 및 소문항 수

물음	1회(2012)		2회(2013)		3회(2014)		4회(2015)		5회(2016)		
	글자 수	문항 수									
민사법	1문	1,770	7개	3,293	9개	3,302	10개	3,512	10개	2,604	13개
	2문	2,933	5개	2,526	4개	3,156	6개	1,450	6개	2,332	6개
	3문	1,173	3개	1,419	4개	1,108	3개	1,183	4개	1,432	6개
	계	5,876	15개	7,238	17개	7,566	19개	6,145	20개	6,368	25개
형사법	1문	888	4개	1,034	5개	1,280	5개	1,017	5개	958	4개
	2문	1,260	6개	1,380	4개	954	4개	1,182	6개	1,785	8개
	계	2,148	10개	2,414	9개	2,234	9개	2,199	11개	2,743	12개
공법	1문	845	3개	894	5개	1,329	5개	977	5개	1,072	4개
	2문	910	9개	1,414	5개	1,248	6개	702	5개	1,236	7개
	계	1,755	12개	2,308	10개	2,577	11개	1,679	10개	2,308	11개
계	9,779	37개	11,960	36개	12,377	39개	10,023	41개	11,419	48개	

물음	6회(2017)		7회(2018)		8회(2019)		9회(2020)		10회(2021)		
	글자 수	문항 수	글자 수	문항 수							
민사법	1문	3,442	10개	2,424	8개	2,782	8개	2,518	9개	4,215	9개
	2문	2,222	6개	2,576	5개	3,060	6개	2,291	7개	1,989	6개
	3문	1,329	5개	1,160	4개	1,424	4개	1,354	5개	1,574	6개
	계	6,993	21개	6,160	17개	7,266	18개	6,163	21개	7,778	21개
형사법	1문	1,260	5개	952	6개	1,004	4개	1,146	5개	1,476	8개
	2문	1,785	8개	1,232	4개	1,303	5개	993	6개	1,245	6개
	계	3,045	13개	2,184	10개	2,307	9개	2,139	11개	2,721	14개
공법	1문	750	3개	729	5개	841	3개	1,776	7개	1,280	6개
	2문	643	4개	952	5개	1,128	4개	1,053	6개	1,297	5개
	계	1,393	7개	1,681	10개	1,969	7개	2,829	13개	2,577	11개
계	11,431	41개	10,025	37개	11,542	34개	11,131	45개	13,076	46개	

(3) 기록형

- 기록형은 일정한 실무용 문서를 작성하게 함
 - 공법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행정소송에 관한 소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등을 작성
 - 민사법은 소장, 반소장, 준비서면,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
 - 형사법은 사건에 관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등을 작성

- 한국 변호사시험은 일본, 미국 뉴욕주와 비교할 때 배점, 시간, 과목 수 등에서 기록형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음 (위의 <표 4> 참조)

- 일본은 기록형이 따로 없고, 이른바 '논문형'이란 형식에 지적도 등 문서의 일부, 대화록 등이 등장하여 지문길이가 2-3페이지에 달하는 경우가 있음
 - 비록 전형적인 사례형보다 지문이 길지만 법문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논하라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례형에 해당함
- 미국의 기록형(MPT)는 우리 변호사시험 기록형의 모델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이 MPT는 가상의 주에서 가상의 법률 하에 일어난 일을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지식보다는 정보처리 및 추론 능력을 묻는 것임
 - 즉 가상 주의 판례, 법조문 등을 제공하고, 이를 참고하여 의견서(메모랜덤)를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 문서 및 가상 주의 판례, 법조문 등을 제공하고 유언장, 답변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함
 - 이때 각종 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 작성레도 제공하므로 서식을 외울 필요 없이 그에 맞춰서 작성하면 됨
 - 따라서 MPT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판례나 조문 등 개별 법지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 분야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면 족함

4.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15명이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위원장 : 법무부차관
 - 위원 : 법학교수 5명(법무부장관 위촉), 판사 2명(법원행정처장 추천), 검사 2명, 변호사 3명(대한변협 회장 추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교육부 공무원 포함)
- 변호사시험 합격율은 제1회부터 제7회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제8회, 제9회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50% 내외 수준임
 - 불합격자 숫자는 제1회 214명에서 제9회 1,548명까지 7.2배 증가하였음
 - 5년간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는 현재 891명에 달함: (1기) 159명, (2기) 218명, (3기) 202명, (4기) 194명, (5기) 118명
 - 합격기준 점수는 제1회 720.46점에서 제9회 900.29점으로 대폭 상승하여, 초기 변호사시험에 서라면 문제없이 합격했을 응시생들이 최근의 변호사시험에서는 불합격하고 있음

〈표 6〉 변호사시험 회수별 합격률 현황

구분	제1회 (2012)	제2회 (2013)	제3회 (2014)	제4회 (2015)	제5회 (2016)	제6회 (2017)	제7회 (2018)	제8회 (2019)	제9회 (2020)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합격자 (합격률)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600 (51.45%)	1,599 (49.35%)	1,691 (50.78%)	1,768 (53.32%)
불합격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641	1,639	1,548
합격점수	720.46	762.03	793.70	838.50	862.37	889.91	881.90	905.55	900.29

- 이처럼 합격률이 50% 내외로 떨어지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 불합격에 대한 공포 때문에 대다수의 법전원생들이 수험적합성이 높은 과목만을 선호하고, 비변 시과목 수강을 기피함
 - 학기 중은 물론 입학 전부터 인터넷 강의에 의존하고, 교과서나 논문은 멀리한 채 수험용 요약서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3년 내내 지속됨
 - 지역인재 균형선발, 특별전형 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입학기회를 확대하였으나 이들의 실질적인 변호사 합격률이 낮으므로 정책과 괴리가 나타남 (〈표 7〉 참조)

〈표 7〉 전형별, 지역별 변호사시험 합격현황 (2019년)

구분	전체	수도권	지방권
일반전형	1,054/1,947 (54.1%)	667/1,089 (61.2%)	387/858 (45.1%)
특별전형	46/137 (33.6%)	34/73 (46.6%)	12/64 (18.8%)
지역인재	60/167 (35.9%)		60/167 (35.9%)

IV 현행 변호사시험의 성과

1. 성과

- 후술하듯이 변호사시험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으나, 평가결과가 상당히 정확하고, 특히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학업 성과와 상당히 높은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점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장점임
 - 대부분의 법전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불합격 여부와 학교 성적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표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의 경우 3년 통산 성적보다 3학년 학교 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변호사시험 선발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그 학생이 달성한 성취를 잘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줌¹³⁾
- 이러한 정확성은 변호사시험이 짧은 시간에 매우 다양한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다 보니, 일종의 다면평가이자 대수의 법칙(rule of large number)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민사법을 예로 들면, 70문제의 5지선다형 문제를 풀고, 장문의 사례형 문제 3개(소문항 기준으로 20-25개)를 풀고, 민사기록을 1권 검토하여 소장 등 실무문서 작성까지를 마쳐야 하므로, 운만으로 합격/불합격이 갈리기는 어려움

2. 긍정적 영향

- 변호사시험의 이와 같은 경향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음
 - ↳ 압축적 교육과정과 압박적 변호사시험의 존재로 인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적인 법 지식을 상당히 신속하게 익히게 됨
- 발표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의 경우 학부 시절의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비교하면, 최상위층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거나 학부 과정이 더 우수했던 면이 있으나, 중하위권끼리 비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성취가 나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교수들도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법과대학에 비하면 경쟁과 압박에 훨씬 노출되어 변화하는 입법·판례 등을 꾸준히 연구해야 하고, 진도를 마치려면 신변잡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강의방법을 고민해야 함
 - 이에 따라 전반적인 강의의 밀도와 질, 교육효과는 법전원 도입 후 훨씬 향상되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현상을 “학문의 쇠퇴” 또는 “철학의 빈곤”이라고 개탄하기도 하나, 종래 교수의 태만과 무책임을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법전원이 전문직 양성기관임을 고려하면 이것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성취이고, 현행 변호사시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13) 물론 변호사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된 그 '성취'가 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요구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잘 반영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

V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1. 출제 방식의 한계

-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에 임박한 시기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위촉을 받은 소수의 출제위원이 외부와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문제은행이 있지만 그 양, 품질, 비밀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문제은행에 크게 의지할 경우 제10회 공법 기록형과 같은 공정성 문제가 우려되고, 문제은행에 의지하지 않고 합숙 후에 창작할 경우 시간적 제약에 따라 결국 판결요지 의존형 문제가 되기 쉬움
- 평소에 출제방식을 연구하고 문제풀을 형성,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생긴 경험이 출제위원 개인의 경험에 그치고 조직적으로 관리 및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도 있음
- 후술하는 문제점의 상당수가 이러한 출제전담 인력 및 기구의 미흡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2. 지나치게 판례에 경도된 출제

-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판결요지를 그대로 묻는 유형의 문제가 선택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례형/기록형도 판결요지를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문제은행에 좋은 문제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속히 문제를 만들고 출제오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도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판례(실제로는 판결요지)”를 외우는 데에 보내고 있음
 - 그러나 판결은 해당 사안에 법리를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고 판례는 그것이 어느 정도 법리로 자리잡은 것이므로, 사실관계와 유리된 명제로서 “판례”를 외우는 것은 실제로는 판례공부라고 하기 어려움
- 2020년을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개 정도의 판례를 알아야(더 정확히는 요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과목별 주요 수험서에서 사건일자와 변호가 언급된 판결의 수를 조사하였음
 - <표 6>은 과목별 판결례의 수이고, <표 7>은 조사의 대상이 된 수험서의 목록임
 - 이들 중에는 중복되거나 동일한 취지를 반복한 것들이 많아 실제 공부해야 할 판례의 수는

이보다 적을 것임

- 그러나 이 숫자는 대부분의 교수나 실무자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고, 이러한 방대한 판례를 외우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학공부를 오히려 저해할 것임

〈표 8〉 주요 수험서에 언급된 학습대상 판례 수

구분	과목명	요약서판례	최신판례	합계
민사법	민법	1,121	74	1195
	민사소송법	431	38	496
	상법	622	21	643
	민사법계			2,334
형사법	형법	2,828	144	2,972
	형사소송법	1,035	25	1,060
	형사법계			4,032
공 법	헌법	1,589	101	1,690
	행정법	606	45	651
	공 법 계			2,341
총계				8,707

〈표 9〉 학습대상 판례 수 계산에 이용된 수험서 목록 (최신판례집 제외)

구분	과목명	요약서
민사법	민법	정연석, 로스쿨 민법의 정석, 정독, 2019. 10. 30.
	민사소송법	정연석, 로스쿨 민사소송법의 정석, 정독, 2021. 1. 30.
	상법	이정엽, 인사이트 상법, 자비스, 2020. 1. 9.
형사법	형법	이용배, 신체계 팝FOB 형법, 우리아카데미, 2019. 1. 30.
	형사소송법	신광은,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웅비, 2019. 6. 24.
공 법	헌법	강성민, 헌법 엑기스, 필통박스, 2020. 1. 17.
	행정법	신봉기·정선균, 판례 행정법, 삼원사, 2020. 7. 24.

3. 피상적 암기 위주의 출제

- 판례를 소재로 삼더라도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피상적인 암기를 요구하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많은 수의 쟁점을 한 문제에 담고 있음
-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요지화된 명제를 많이 암기해서, (사례형, 기록형의 경우) 그때그때 논점에 맞춰 조건반사적으로 답안지에 쏟아 놓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임
- 대립되는 입장의 논거를 비교·대조하고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사례형 소문항당

10분 미만의 시간 내에 어차피 불가능하므로, 논점에 해당하는 피상적인 지식을 “아는 것처럼 현출”하는 데에 치중

- 이처럼 현행 변호사시험은 학생들에게 법적인 사고를 연마하기보다는 판결요지를 얹고 넓게 암기해서 아는 척 답안지에 표출하라는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보내고 있음
- 사법시험보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가 더 길고 더 많은 논점(소문항)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더 피상적이고 더 안전지향적인 학습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임

- 그러나 이는 기존의 판례에 끼워 맞춰서 사건을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잘못된 태도를 내면화할 우려가 있음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는 것은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판례법 국가로 불리는 영미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판례를 주된 학습소재로 삼아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 등을 검토하지만, 판결요지를 암기의 대상으로 삼아 평가하는 예는 드물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학교 교과과정과 달리 암기할 사항들이 늘어나지만, 합격에 요구되는 지식의 양이 한국 변호사시험에 비교할 수조차 없이 적어서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시험 준비 전체를 끝낼 수 있고, 선택형 문제조차도 판례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추론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습성이 익혀질 겨를이 없다.

결국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판례법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판례를 맹신하는 특이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학습자들의 시야를 현행 대법원 판결에 국한시키고, 새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의 본질을 음미하기보다 기존의 판결요지에 끼워 맞추려는 매우 나쁜 실무 습관을 기르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적”이지도 않다.¹⁴⁾

4. 현행 기록형 시험의 한계

- 기록형 연습은 이론으로 익힌 법지식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효과가 크고, 잘 설계하면 실무능력 배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록형 연습 및 평가는 개별 서류의 작성기술을 증진시키거나 지식을 테스트하기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한 쟁점 파악 능력 및 건전한 추론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앞으로 작성해야 할 법문서는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공소장, 불기소장, 변론요지서 등 종래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던 문서 외에도, 각종 의견서, 보고서, 신청서, 계약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서신, 규정안, 법률안, 고소장, 탄원서 등등 직역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있음
 - 따라서 법전문원에서 이러한 개별 문서작성 능력 배양에 집중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됨
 - 오히려 이들이 다양한 직역에 진출하여 그 직역에 특유한 문서작성 방식을 빨리 익힐 수 있는 기초 실력을 다져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기록형 출제의 취지도 이러한 교육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함

14) 참고(각주 1)에서 전재함.

- 그러나 상당수 기록형 문제는 사례형으로 평가해도 충분한 법적지식을 묻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존대말로 쓰는 사례형”)
 - 수많은 실체법, 절차법적 쟁점을 짧은 분량에 집어넣어서 실제 동일 분량의 사건기록에 비하여 훨씬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인위적 쟁점과다형” 기록의 형태를 띠고 있음
 - 사법연수원 교육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인위적 쟁점과다형” 기록의 효율적인 처리 능력은 단기간 훈련으로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술적 능력에 불과하고, 실제 실무능력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것이 3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됨 ⇨ 한정된 교육과정상 이러한 능력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면, 필연적으로 다른 교육이 부실해지게 됨¹⁵⁾
 - 과다한 쟁점이 포함된 복잡한 분쟁을 한정된 지면에서 표현해 내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록 또는 당사자 간의 내용증명 우편에서 각종 쟁점을 포함한 분쟁의 스토리와 당사자의 주장을 서술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함 ⇨ 이 역시 기록형과 사례형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
- 공법 기록형은 기록은 한 권이지만 사실상 헌법 한 문제, 행정법 한 문제를 별도로 출제하는 추세인데, 소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을 소장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제 변호사가 작성하는 소장과는 거리가 있고, 사례형과 별도로 기록형을 평가하는 의의가 퇴색됨
- 민사법 기록형 시험은 “가능한 한 패소하는 부분이 없게 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 재재항변까지 미리 고려하여 마치 판결문의 주문을 작성하듯이 승소가 확실한 범위로 청구를 최소화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예컨대 “이에 대해 피고는 (...)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 등과 같이 상대방이 할 항변을 소장에서 미리 언급하여야 그 부분에 할당된 배점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채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사법연수원 민사판결문 작성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변론주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소송실무와도 크게 다른 것이어서, 실무에서도 나쁜 습관을 심어줄 수 있음

5. 시험방식의 문제점

- 사례형, 기록형의 방대한 답안을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손으로” 작성하고, 그 손 글씨를 읽고 채점해야 하므로, 응시자와 채점자 모두가 무용한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음
- 시험일자와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길고 압박적이어서, 시험이 체력테스트가 되는 면도 있고 장애인 등의 합격이 매우 어려움

15) 기록형 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경우, 학생들은 기껏 공들여 마련한 특성화 과목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소홀히 하고 기재레 암기에 골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로서 전통 송무 영역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독려해야 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을 다시 송무 영역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송무 영역의 포화상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리고 어차피 당장의 기안능력을 배양함에 있어서는 사법연수원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설픈 연수원 흉내 내기에 그치게 될 위험도 있음.

6.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적 영향

- 학생들 사이에서 **판례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 현상**, 더 정확히는 ‘판결요지’를 절대시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음
 - 이는 변호사시험에 특유한 현상은 아니고 사법시험 시절, 특히 판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답 오류로 쟁송이 벌어지던 2000년대 초반부터 심화되어 온 현상임
 - 원래 “실무적”이란 것이 “맹목적 판례 추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안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감별해 내고, 기존 판례 법리의 규범적 의미를 음미하여 다른 사안에서의 기계적 적용을 자제하며, 사안을 구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의 변경을 추구하는 것이 수준 높은 법률가의 미덕임
 -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압박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판례의 이면을 들여다보거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치부하게 됨 ⇨ 개별 판례의 특수한 사정에 주목하거나 유사 판례와의 차별성을 분석하는 등 깊이 공부한 학생이 판결요지만을 외운 수험생들보다 답안 작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의 경향을 비난하기 어려움

- **변시과목 일변도의 학습 편향**이 가속화됨
 - 다양한 선택과목이나 심화과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고, 많은 법전원에서 기초법을 비롯한 이른바 비변시과목은 폐강 위기에 몰려 있음
 -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의 변시 과목, 실무과목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졸업학점 90학점 중 전공필수 학점¹⁶⁾과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다수가 수강하는 학점¹⁷⁾을 제외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무관하게 선택하는 과목은 매우 적음
 - 물론 이른바 변시 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이므로, 한정된 교육기간 동안 이들 과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
 - 다만 이들 과목에 관하여는 수천 개의 판결요지를 외울 정도로 많은 양을 학습하면서, 다른 법 과목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개념¹⁸⁾조차 알지 못한다면 균형을 잃은 것임
 - 더구나 대부분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법학개론이 사라지고 법철학, 법제사 수강생도 줄어들면서, 법실증주의 vs 자연법, 구체적 타당성 vs 법적 안정성, 관습의 법제화 vs 외국법의 계수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이론으로서의 법학의 약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실무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16) 서울대의 경우 공법 1, 2, 3, 민법 1, 2, 3, 민사소송법, 형법 1, 2, 법정 필수과목 5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법무실습) 등 32학점의 전공필수 과목이 있고, 이에 더하여 기초법(로마법, 법사상사, 법사회학, 법인류학, 법정정책, 법철학, 한국법제사, 법경제학) 1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므로 35학점의 필수학점으로 운영됨

17) 서울대의 경우 수강비율이 높은 과목은 민사재판론(민사소송법 2에 해당),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형사증거법, 행정구제법, 회사법, 상거래법(상법총론과 어음수표법에 해당),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1, 임상법학, 민사법실무연습, 형사법실무연습, 헌법실무연습, 행정법실무연습, 상사법실무연습 등임 (이들 과목의 합계는 47학점).

18) 예컨대 민사법에 관한 판례 수천 개를 외우면서도 취업규칙/단체협약, 공익채권/회생채권, 저작권/특허권,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의 뜻조차 모르면서 법전원을 졸업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임

- 위와 같은 현상, 즉 피상적인 암기, 판례 요지의 절대시, 맹목적인 기재례 암기, 수험과목 편중 등은 장기적으로 졸업생들의 실무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됨
-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서 변호사의 진정한 실무능력은 판례를 많이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서면을 작성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쟁점파악 능력, 소통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 판단력, 공감 능력 등이 될 것임
- 이런 능력들은 법전원 3년의 교육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의 싹들을 법학교육을 통해 망쳐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끊임없이 머릿속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교육과 학습, 수천 개에 가까운 판결요지를 의문 없이 외우는 방식의 학습은 이런 능력의 함양을 방해하거나 퇴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됨
- 적어도 일부 과목에서라도 생각거리와 시간을 주고 스스로 고민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그럴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완전히 갖아갈 수 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변호사의 실무능력이란 단순히 기존 판례를 맹종하고 기존 기재례를 답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쟁송업무를 하는 이른바 송무변호사는 “해당 사안과 판례의 사안의 차이를 발견하는 분석적 사고”와 “때로는 기존 판례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 사고”를 해야 하고,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을 갖춰야 한다. 쟁송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즉 이미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이나 거래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조언하거나 입법·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에 대한 지식과 분석력에 추가하여 대안과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적 사고와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실무능력이다.

[...미래에는...] 법실무 자체가 법적 지식의 활용보다는 현명한 조언 내지 전략 제공으로 무게를 옮겨갈 수밖에 없다. 즉 미래의 법실무에서는 쟁점을 인지하고 정확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의 정서와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는 공감능력,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구두 및 문서상의 소통능력,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포함한 여러 정보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하거나 고객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판단력 등이 더욱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될 것이다. 미래세대 변호사들, 특히 엘리트 변호사들의 진정한 ‘실무능력’은 판례를 많이 암기하고 관행대로 법률문서를 기안하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은 그 반대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¹⁹⁾

7. 송무 집중 현상의 강화

- 변호사시험의 압박, 판례의 무비판적 추종, 기록형 시험에의 지나친 경도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 영역과 진로 전망이 축소되고, 법원에서 벌어지는 전통적 송무만이 법률가의 직역이라고 생각하는 습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발표자가 2018년에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려면 일정 기간 송무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문에 대해 “매우 동의” 40.6%

19) 참고(각주 1)에서 전재함.

(서울대 33.9%, 고려대 56.6%), “다소 동의” 55.0% (서울대 60.6%, 고려대 41.5%)로서, **동의한다는 대답이 95.6%**에 달함 (서울대 94.5%, 고려대 98.1%)

- 중소기업 법전원과 지방 법전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 중 송무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하나일 뿐이고, 변호사의 직역은 송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학생들의 인식대로 “변호사라면 반드시 송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국 대형 로펌의 자문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수많은 변호사들, 영국의 수많은 사무변호사들(solicitors), 미국 로펌에서 송무팀 이외에 속한 수많은 변호사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수많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로서 안정적인 활동이 어려운’ 변호사들이라고 할 것임
 - 위와 같은 학생들의 인식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의 ‘비송무’ 영역으로의 진출을 꺼리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로 법전원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도입 후에도 변호사들의 송무집중 현상은 완화되고 있지 않음 ⇨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들의 인식 문제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데에는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송무 편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됨

[참고] 법률시장 및 송무시장의 변화

-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의 사건접수 건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에 2010-2019년의 법원 사건접수 건수의 변동추이는 <표 10>과 같음 ⇨ 송무변호사의 수입료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민사본안 사건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송무사건 수는 정체 상태임**

<표 10> 법원 사건접수 지수 (2010년=100) (가사는 1심, 나머지는 전심급)²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민사합계	100.0	102.7	103.9	109.3	108.8	104.9	111.8	113.9	112.1	112.3
민사본안	100.0	100.7	106.7	111.8	116.0	103.6	100.7	105.2	99.6	99.2
민사본안외	100.0	103.4	103.0	108.5	106.5	105.4	115.4	116.8	116.2	116.6
가사	100.0	102.7	101.0	97.3	96.9	95.6	93.3	89.6	90.5	89.7
형사합계	100.0	97.3	95.4	97.9	93.8	93.7	97.9	92.2	86.7	88.0
형사공판	100.0	103.5	106.2	100.5	102.9	102.0	109.1	104.3	95.3	96.2

- 반면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로 측정한 **국내 법률시장 매출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만 같은 기간 변호사 숫자도 그 이상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송무사건 수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비송무분야 및 대형로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함

20) 2020년 사법연감 참조.

〈표 11〉 국내 법률시장 매출 규모 (단위 1조원)²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규모	3.1042	3.4706	3.6096	3.8778	4.2182	4.6373	5.0623	5.4158	5.9335	6.3438
지수(2010=100)	100	111.8	116.3	124.9	135.9	149.4	163.1	174.5	191.1	204.4

- 한편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법률서비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20년의 경우 법률서비스 대외지급은 1조 7471억원, 법률서비스 수입(收入)은 1조 236억원, 법률서비스 무역시장 규모는 2조 7707원, 무역적자 규모는 7234억원임²²⁾
 - 법률서비스 무역시장 규모인 약 2.8조원은 국내총매출 약 6.3조원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큰 비중을 해당함 ⇨ 대부분의 법률가 및 법학교수들은 “내국인(내국기업)의 국내사무”만을 법률 시장으로 생각하고 법학교육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광대한 섭외 업무 영역이 존재함
 - 이러한 국경간 법률서비스 영역,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외국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해당 외국의 변호사들을 관리하고, 그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고객에게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임 (주요 영미 로펌들이 이런 분야에서 높은 매출을 올림)
- 즉 현재 한국 법률시장의 추세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한 경쟁 심화, 변호사 수의 증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꾸준한 매출 증가, 송무사건 수의 정체, 비송무 및 국경간 법률서비스의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법학교육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시야를 “국내 송무”로 국한시키는 것은 법률가의 성장 가능성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우려됨

VI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1. 출제 담당 기구의 구성

- 시험을 목전에 둔 시기 뿐 아니라 평소에도 출제의 방향과 문제의 구성을 연구하고 문제 풀이 형성 및 관리하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함
 - 앞서 지적한 문제점의 상당수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었음에도 상근으로 변호사시험을 담당하는 전문가 및 기관이 미흡하여 개선의 동력을 얻지 못한 면이 있음

21)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자료에 의한 (리걸타임즈 2020.7.22.).

22) 한국은행 2020년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참조

- 실제로 의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의료인 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등 주요 자격시험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특히 의사시험을 비롯한 의료인 자격시험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진행하며, 다수의 전담 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문제은행을 관리하여 문제를 추가, 삭제, 변경하고 있음
- 법학적성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경험이 누적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의 확충과 전국 법전원 교수와 법조실무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

2. 출제 방식의 변화

(1) 일반

- **(암기요구량 축소)** 변호사시험에서 요구되는 조문과 판례의 암기량을 지금보다 줄여야 함 ⇨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잡다한 지식을 잔뜩 암기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 다른 한편 근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판례를 많이 외우고 있더라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야 함
 - 발표자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출제하더라도 불합격자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변별력은 충분하다고 봄
 - 암기할 판례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발표자는 필수판례 또는 중요판례를 과목에 따라 일정 수 지정하여 판례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는 그 범위에서만 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었고, 이는 기본판례 선정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 **(기본판례 활용)**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주도 하에 기본판례 선정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므로, 판례의 내용 자체를 묻는 문제는 가급적 이 범위에 한정하고, 대신 추론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유형을 많이 개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본판례 선정이 판결요지의 암기라는 폐해는 그대로 둔 채 암기할 판결요지의 수만 줄여준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됨
 - 즉 기본판례 선정을 통한 암기대상 축소는 단순히 학생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절약한 시간과 노력을 더 심도 있는 분석과 학습에 쓰기 위한 것임
- **(문제풀이 구성 및 관리)** 이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다수의 문제 풀이 평소에 구성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명망 있는 실무가와 교수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대가를 제공하고 출제를 의뢰하여 풍부한 문제

풀을 마련하고, 전담 연구인력이 이를 관리해야 할 것임

- 실제로 많은 교수들이 판결요지 위주의 출제 방식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같은 출제에 이르게 되는 것은 (i) 축적된 양질의 문제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ii) 그런 한계 내에서는 판결요지를 그대로 문제화해야 정답 시비가 없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인데, 충분한 문제 풀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임

○ **(중요 쟁점에 대한 반복 출제)** 최근 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지엽적으로 되어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출문제와의 중복을 피하려는 데에 있으나, **중요한 쟁점이라면 반복 출제를 회피할 이유가 없음**

- 변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와 능력을 측정하려면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하고, 그렇다면 유사한 주제와 쟁점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함
- 반복을 피하려고 새롭고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보다는 반복되더라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교육목표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됨²³⁾

(2) 선택형

○ **(새로운 문제 유형 개발)** 선택형의 경우 사후적인 관점에서 객관자적 지위에서 답을 고르도록 하는 현재의 문제 유형 외에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대립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각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고르게 하는 문제
- 사안을 제시하고 그 사안에서 특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게 하는 문제
- 같은 결론이라도 이유제시를 다르게 하여 여러 개의 설문을 제시한 후 그 중에서 고르게 하는 문제

○ **(지식이 아닌 추론을 묻는 문제 확대)** 미국 전주공통 선택형(MBE)의 경우, 특정한 판례나 법령의 입장을 확정하기 어려움에도 별다른 정답 시비 없이 광범위한 문제 풀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식이 아닌 추론을 묻는 문제 유형이 발달되어 있는 점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컨대 하나의 사실관계 및 질문(A는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는가?)을 준 후, 선택지로 ① Yes, because ###, ② Yes, because \$\$\$, ③ Yes, unless &&&, ④ Yes, unless %%% 등을 제시하여, 결론을 암기하고 있는지보다는 쟁점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음
- 이러한 문항을 통해 결론만 외운 사람과 그 결론의 논거를 이해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음

(3) 사례형

23) 상대적으로 민사법 사례형 3문(상법)의 경우 1, 2문에 비해 비교적 “불의타”가 적고 중요한 주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음. 그 때문에 학생들이 민법에 비해 상법 공부를 등한시한다는 상법 교수들의 불만은 있으나, 모든 과목이 그러한 경향을 공통적으로 취한다면 그런 문제도 줄어들 것임.

- **(쟁점 및 소문항 숫자 축소)** 한 문제에서 다루는 쟁점 내지 소문항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타당함
 - 때로 10개도 넘는 쟁점을 억지로 하나의 사안에 우겨 넣어 비현실적이거나 모순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출제자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쟁점에 걸쳐 응시자들의 지식과 이해도를 테스트해 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나, 이런 출제방식은 출제자의 의도처럼 학생들이 여러 쟁점을 성실히 공부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여러 쟁점을 “아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게 됨
 - 이런 학습태도가 일반화되면 대략 들어맞는 법리를 현출하는 기술은 증가하는 반면, 현실에서 실제 쟁점을 만났을 때 끝까지 분석해내는 힘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이는 법전원의 교육목표와 상반됨

- **(쟁점발견형으로의 재전환)** 최근의 추세는 문제별로 일일이 쟁점을 특정하여 물어보는 ‘쟁점제시형’이 대다수이나, 사안 자체는 단순하게 구성하되 스스로 쟁점을 발견하게 하는 ‘쟁점발견형’의 비중을 늘려야 함
 - 쟁점제시형이 주종을 이루게 된 것은 채점(쟁점별 배점)의 편의와 출제 오류 시비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법률가로서는 ‘물어본 문제에 대한 판례가 무엇인가’보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는 인공지능이 판례검색 등 리서치 기능을 가져갈수록 더욱 그러할 것임
 - 무리한 과목간 융합을 시도하지 않고, 중요한 주제의 반복 출제를 용인하면서 기본적인 쟁점을 다룬다면, 출제 시비 없이 쟁점추출형 문제를 충분히 출제할 수 있을 것임

- **(무리한 융합출제 지양)** 무리하게 문제별로 여러 과목을 융합하는 것 같은 외관을 취하기보다는, 개별 문제는 특정 과목에서 출제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의 능력을 측정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예컨대 미국 전주공통 사례형(에세이형)인 MEE 시험은 3시간에 6문제를 풀게 하는데, 각 문제는 주로 단일 과목에서 출제되고 무리하게 융합의 외양을 취하지 않음
 - 2019년 7월의 경우 상속법(유언), 형사소송법(미란다고지), 회사법(모회사의 책임), 가족법(배우자 부양), 계약법(손해배상), 민사소송법(관할, 집단소송의 원고적격 등)에서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음
 - 따라서 특정 해에는 특정 과목이 아예 출제되지 않기도 하지만, 매년 6문제에 들어가는 과목이 조금씩 변경되므로 학생들로서는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함
 - 또한 각 문제는 쟁점제시형이 아니라 쟁점추출형이므로, 6개의 사례문제를 보고 이것이 무슨 과목의 문제이고 쟁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 됨

(4) 기록형

- **(비중과 형식의 재검토)** 기록형을 지금과 같은 비중과 형식으로 유지할지는 재검토를 요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의 변호사들이 작성할 문서의 종류는 그가 진출하는 직업에 따라 실로 다양할 터인데, 그중 특정한 몇몇 문서의 작성요령을 3년의 교육과정에서 익히도록 하여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엽으로 흐를 우려가 있음
 - 다만 모의기록은 법적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한 학습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기록형 자체를 모두 없애기보다는 그 비중과 형식을 조정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임
- **(쟁점 간소화 등)** 쟁점 및 소문항의 수를 축소하고, 법지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주어진 정보 속에서 추론하는 능력을 중시하여야 함
 - 현재의 기록형은 실제로 있기 어려운 ‘인위적 쟁점과다형’으로서 오히려 학생들의 현실감각을 해하는 측면마저 있음
 - 현재의 기록형에서 묻고자 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지식은 사례형으로도 측정할 수 있음
- **(변호사실무에 부합하는 서면작성)** 민사 기록형에서 ‘가능한 패소하는 부분이 없게 하라’고 지시하여 소장을 마치 판결문처럼 사후적/전지적 시점에서 작성하게 하는 방식은 변론주의에 기반한 민사실무와도 상반되고 고객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 소장, 답변서 등의 서면작성은 판사의 시각이 아닌 당사자/변호사의 시각에서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만약 사후적/전지적 시각에서의 분석을 원한다면 사례형으로 출제하거나 (기록형이라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5) 이른바 변별력의 문제

- 발표자가 주장한 쟁점 간소화, 쟁점발견형으로의 재전환, 무리한 융합출제 자체, 중요한 쟁점 위주 출제 등에 대해서는 그 경우 ‘변별력이 없다’는 반론이 예상됨
 -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등수를 매기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았음에도 아직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시험임
 - 설령 지금 수준의 합격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발표자가 주장한 대로 출제하더라도 충분히 하위권을 변별할 수 있다고 봄
- 예컨대 1993년 사법시험 제35회 민법의 사례문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음 : “갑은 길을 가다가 미성년자인 을이 쓴 새총에 맞아 눈을 다쳤는데, 사실혼 관계인 병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을과 그 부모 정, 무의 책임에 대해 논하라”
 - 이 문제의 쟁점으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문제, 부모의 불법행위 책임 문제,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치료비, 간호비, 노동능력 상실 등) 등이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 매우 기본적인 쟁점임
 - 그런데 발표자가 법전원 학생들에게 “옛날에는 사례문제가 이렇게 쉬웠다”는 취지로 이 문제를

- 말해주자 오히려 쟁점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경우를 보았음
- 이러한 기본적인 사례를 통해 기본적인 쟁점추출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오히려 변호사시험의 '변별력'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지?
 - 또 다른 예로 2019년 미국 변호사시험 사례형(MEE) 1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A가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아들 B와 그의 사랑하는 부인(이름 명시 안함)에게 준다’고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음. 유언장 작성 당시 B의 아내는 C였고 그 사이에 아이들 D, E가 있었는데, 그 후 C가 사망하고 B는 F와 재혼하였음. 그 후 A가 사망하였고, 자식으로 B 외에 G가 있음. A의 유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 (부여시간 30분)”
 - 이 문제의 쟁점으로는 유언의 방식, 유언의 해석, D/E의 대습상속 인정 여부, G의 유류분 인정여부 등이 될 것이고, 이는 상속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쟁점임
 -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에서는 특정한 법만으로 문제 전체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통념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속법 쟁점만을 물어볼 수는 없고, 다른 법과 연관시켜 문제의 외양을 복잡하게 만든 후, 막상 개별 문제에서는 쟁점을 다 가르쳐 주면서 답을 물을 것임 (예: G는 위 유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D와 E는 C의 사망에 따라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가?)
 - 그러나 이 MEE 문제와 같이 기본적인 사례에서 기본적인 쟁점을 묻더라도 쟁점발견형을 취하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3. 시험 방식의 개선

- (CBT 도입) 사례형 및 기록형은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CBT: computer-based test) 손 글씨 작성에 따른 수험생과 채점자의 무용한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많은 대학과 많은 주의 변호사시험 당국이 수험용 소프트웨어²⁴⁾를 미리 설치한 응시자의 개인 랩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간, 기말고사 및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허용하고 있음²⁵⁾
- 다만 소프트웨어 오류, 기계 고장 등의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희망자에 한하여 CBT를 실시하고, 희망자로부터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각서를 받으며, 만약 기계적 문제가 있으면 즉시 종이 답안지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i) 미국의 다수 주처럼 각자 위험 부담 하에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수험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 또는 (ii) 주무부서에서 응시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당일 임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4) 이를 실행하면 답안 작성을 위한 간단한 워드프로세서 화면이 열리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컴퓨터 내외부의 모든 정보에의 접근이 차단됨.

25) 대학의 예로 <http://www.law.columbia.edu/registration/exams/laptop-exams> (컬럼비아 로스쿨의 교내 시험에서 랩탑 컴퓨터 이용에 관한 공지). 변호사시험의 예로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New York State Bar Exam Information Guide, 2016, pp. 5-6 (<https://www.nybarexam.org/thebar/thebar.htm>).

- (선택과목 이수제) 선택과목에 대해 별도로 사례형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는 일정한 학점의 이수를 요구하는 것이 고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임
 - 현재는 수험에 필요한 공부량이 적다고 알려진 국제거래법에 선택이 집중되고 있어 선택과목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고, 막상 국제거래법 선택자들도 학교 강의를 듣기보다 인터넷 강의와 요약교재에 의존하고 있음

VII 요약 및 결론

-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는 운이 아닌 실력에 의해 합격자를 비교적 정확히 선별하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경쟁압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출제 내용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판례에 경도되어 있다는 점, 피상적인 암기 위주로 출제된다는 점, 기록형 시험이 “존대말로 쓰는 사례형”에 불과하여 독자적 의의가 반감된다는 점, 융합형 출제의 외관을 좇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파편화된다는 점
 - 출제 방식에 있어서는 양질의 문제풀이 부족하고 상시적으로 시험문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즉흥적 출제가 우려된다는 점
-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학생들 사이에서 ‘판결요지’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 현상이 심해지면서 비판적/분석적 사고가 제약되고, 변호사시험 과목 일변도의 학습편향이 가속화됨
 - 미래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실무능력을 키우는 데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 국내송무 집중 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 시험을 목전에 둔 시기 뿐 아니라 평소에도 출제방향과 문제구성을 연구하고 문제풀이를 관리하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임
 - 지식이 아닌 추론을 묻는 문제의 확대, 새로운 문제 유형 개발, 쟁점의 수 및 소문항의 수 축소, 쟁점제시형이 아닌 쟁점발견형으로의 전환, 무리한 융합출제의 지양 등이 필요함
 - 기록형의 경우에는 그 비중을 재검토하고, 쟁점을 간소화하되 실제 기록과의 근접성을 늘리고, 판사실무가 아닌 변호사실무에 부합하는 서면작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선택과목은 시험보다 과목이수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고, 희망자는 컴퓨터로 응시할 수 있도록 CBT 도입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명수,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학논고 63집 (경북대학교, 2018)
- 김선수, 사법개혁리포트, 박영사, 2008
- 김용섭,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제142호 (한국법학원, 2014)
- _____,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의 바람직한 출제방향”,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김인재,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김재봉,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시험의 출제방향”,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 김창록, 로스쿨을 주장하다-한국 로스쿨 탄생의 기록, 유니스토리, 2013
- _____,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저스티스 제146-2호 (한국법학원, 2015)
- 김태명,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방안 - 형사법 시험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 명순구·홍영기,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2019
- 박동진,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저스티스 제124호 (한국법학원, 2011)
- 박종보,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의 출제방식”, 법학논총 제31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박 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제151호 (한국법학원, 2015)
- 박찬운,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저스티스 제159호 (한국법학원, 2017)
- 백경희·장연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제84호 (2019)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아태법연구소,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2018
-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법학논고 63집 (경북대학교, 2018)
- 원혜옥,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출제방향”,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 윤태석,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의 출제 방향에 관하여”, 법조 제719호 (법조협회, 2016)
- 이연갑, “변호사시험과 민사법 교육 -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소재로”,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이종수,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공법의 경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 이진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형의 예시적 분석과 평가”, 민사법학 제76호 (한국민사법학회, 2016)
- 이창현,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법 선택형 문제의 적합성 연구: 제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시험의 1책형 21문과 40문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_____,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시험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이호선,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제15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5)
- 이호중,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 임성권·이미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적정성”,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전형배, “변호사시험과 상법 교육방법론”, 저스티스 제118호 (한국법학원, 2010)
- 정재황, “변호사시험의 공법형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5)

지원림, “변호사시험의 방법과 범위: 민사법의 경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3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2)

진흥기, “변호사시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조 제60권 제3호 (법조협회, 2011)

차정인,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통합사례형 문제 출제방향”, 법학연구 제53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차진아·전학선·최준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쟁점분석과 대안모색에 관한 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2019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제36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7)

최준선, “변호사시험과 상법교육의 방향”,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Erin A. O’Hara, Larry E. Ribstein, The Law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New York State Board of Law Examiners, New York State Bar Exam Information Guide, 2016

Richard Susskind, Tomorrow’s Lawyers – An Introduction to Your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Richard Susskind, Daniel Susskind,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How Technology Will Transform the Work of Human Experts,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1

이동형 원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이동형 | 원장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자께서 아주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변호사시험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현실에 관하여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하셔서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발제문에서는 학생들의 공부, 학습방법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발제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저의 생각과, 이 발제문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것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한 두 가지를, 두서 없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1. 현재 시험 출제방식 또는 학생들의 공부 관련

발제자께서는 현재 학생들에게 암기를 요구하는 내용(판례)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고, 그들이 주로 공부하는 교재도 학원 강사들이 쓴 책을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원 강사들이 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가르친 교수들이 쓴 책의 요약판,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시험 문제가 이런 책들에 있는 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책들이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너무 많은 판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이나, 저에게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빼서 분량을 줄여보라고 할 때 과연 얼마나 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거기에 변호사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반적인 법 지식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라는 말을 듣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일반인들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 외에 예외, 예외의 예외,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시험에서 세부적인 판례까지 묻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지만이라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판결의 요지는 결국 법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발제자께서는 피상적 판례 암기(24면), 판례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27면)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때로는 기존 판례의 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는 개방적 사고”를 해야 하고,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는데(28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변호사가 되어서 실무에 종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어느 정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교수들이 해 주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기록형 문제와 관련하여

발제문에 의하면, 기록형 문제는 사례형으로 평가해도 충분한 법적지식을 묻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26면), 저의 경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기록형 시험 공부 가 변호사로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차라리 학생들이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까지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기록형 시험이 사례형 시험보다 더 의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록형 문제와 관련하여 송무집중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26면, 29면), 물론 송무는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 중의 하나일 뿐이고 그 활동방식은 송무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법적인 문제점을 품고 있는 모든 분석이나 판단은 결국 재판까지 갔을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제지식을 갖추는 것이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기록형 문제를 강화하거나 유지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사례형 문제의 유형 및 채점기준

기록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채점의 객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록형이 오히려 사례형 문제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형 문제의 경우, 저는 채점기준의 통일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로부터 받는 질문 중에서 특히 많은 것은 “문제의 소재’ 또는 ‘논점’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학설은 써야 하는가? 쓴다면 어디까지 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설은 문제의 배점을 봐 가면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의 소재’ 또는

‘논점의 정리’ 같은 것은 매번 채점기준에 들어가지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며, 과목마다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정한 배점을 한 채점기준표를 보면, 저 자신은 “과연 서론부분에서 「쟁점의 정리」 같은 것을 쓰지 않았더라도 본문에서 다루었다면 그 부분을 쓰지 않았더라도 점수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통일된 기준을 정하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의 문제

판례의 암기 등의 문제 외에도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문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시험과목 일변도의 학습편향 같은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이 3년이라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도 기인하지 않나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법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은 민사사건, 형사사건이고, 행정사건이나 헌법 소송은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아닌 한 그리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적인 지식은 결국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에 대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과목,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특허법, 조세관련법률은 특수법 분야로서 민법, 형법, 헌법의 기초가 다져진 위에 별도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법 분야에 대해서까지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택과목에 대한 이해를 기대한다면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4년 정도로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계열에서 변호사시험과 자주 비교되는 전문직으로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있는데, 의과 대학은 오래전부터 6년제였고, 약학대학도 6년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약학대학의 경우 학부를 졸업한 학생이 입학하더라도 4년간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학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되면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4년제로 운영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2

정진아 교수 (사법연수원)

토론 2

정진아 | 교수 (사법연수원)

먼저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신 천경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주시고 대안이 제시된 인상 깊은 발표문이었습니다.

종래 사법시험이 법률가 자격을 얻는 관문으로 오랫동안 기능하면서 대학교육과 법률가 양성이 단절되고 그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시험준비에 치중하면서 법학교육이 형해화 되었던 계속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합니다)의 출범 이후,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가 상당부분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법전원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일부 법전원과 학생들의 사활이 걸린 관심사가 되면서 예전 사법시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목표와 변호사시험 준비가 유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찌보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결국 **'평가'가 교육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처럼 한정된 문제은행의 풀에서, 판례의 결론(요지)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로서는 요약된 자료를 암기하고 학원 강사의 강의(인강)를 수강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은 어찌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겉핥기' 공부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를 전후하는 현실에서 일단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그 다음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충실한 교육을 시행할 여건을 갖추고 법전원에서의 우수한 학점이 취업이나 희망직역, 진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부 법전원에서는 변호사시험이 어떠한 내용이건 당초 법전원이 추구하였던 이상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규모가 매년 배출되는 1,500명 가량의 변호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신규변호사들의 고용주에 해당하는 중견변호사들이 법전원에서의 교육내용이나 변호사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채 별다른 정보 없이 법전원의 네임밸류에 의존하여 변호사들을 채용하여, 중소형 법전원이나 지방 법전원의 경우 우수한 성취(학점)를 한 졸업생들도 취업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사법시험의 큰 폐해로 지적되었던 ‘법학교육의 형해화’는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는 가급적 ‘평가’와 ‘교육’의 싱크로율을 높여,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전원 교육 커리큘럼은-각 학교마다 다른 점은 있으나, 도입 초기에 여러 선진국 법학교육 시스템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통해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변호사시험으로 대변되는 ‘평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이 법전원의 교육목표를 잘 달성해 주는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신 천경훈 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법연수생 지도(1년)와 법전원 출강(2년)을 담당한 경험이 있고, 다시 작년인 2020년 2월 사법연수원에 발령을 받아 신임법관연수 전담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사법연수원의 재판실무과목과 변호사시험 기록형에 중점을 두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2010. 2학기 19개교에 형사재판실무 강의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과 수도권 15개 법전원에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지방권역 10개 법전원에는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출강하여 3학년 1학기 전공선택과목으로 민사재판실무를, 2학년 2학기 전공선택과목으로 형사재판실무를 강의하였다가, 2015년부터는 제주대 법전원을 제외한 전국 24개 학교에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전담하여 재판실무 강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전국 동시, 동일 시험으로 수강생 전원에 대한 동일기준의 성적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강 초반기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병용되고 있었고, 비록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의 사법연수생들이 있어서, 사법연수원의 주된 업무는 여전히 사법연수생을 상대로 각종 재판실무를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경훈 교수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법연수원의 평가방식은 짧은 시간에 여러 쟁점을 담은 ‘인위적으로 제조된’ 기록을 파악하고 법률적 쟁점을 추출한 후 숙지된 판례를 적용하여 정답을 도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의 배경에 대한 성찰보다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숙지하고 이를 사안에 바로 적용하여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출강지원 초창기에는 사법연수생 교육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과외업무로 서울과 수도권 법전원 1~2곳에 출강을 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법전원생들에 대한 재판실무교육의 콘텐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사법연수생 민형사 재판실무 커리큘럼 중 일부를 그대로 축약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구나 2015년부터 전국 법전원에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출강하여 재판실무 과목을 강의한 이후에는, 전국 동시·동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법전원별로 취합되는 것이 아닌 전국 공통 석차가 나오다보니, 각 법전원간 형평성 문제로 사법연수원 원내교육과 마찬가지로 출강교수들이 강의 콘텐츠를 세세한 분야까지 합의하고 판례에 따른 '정답' 위주의 강의를 하는 등 획일화된 강의 패턴이 굳어졌습니다. 이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우선선발제도'가 도입되면서 민사재판실무 및 형사재판실무 기말시험 결과는 재판연구원 우선선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 재판실무강의가 법전원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송무의 기본수준 확보라는 교육목표보다는 재판연구원 시험 준비의 전초전 또는 변시 기록형 시험 대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조경력이나 요구되므로 법전원 졸업생들이 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법연수원의 재판실무 과목의 콘텐츠는, 비록 그 평가가 '판결문' 작성이 아닌 '검토보고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예상 주문(민사) 또는 유무죄판단(형사)을 요하고 검토보고서의 작성 형식도 판결서에서 요구하는 증거 기재 방식이나 서술방식을 요하는 등, '법관'의 시각에서 '판결문'의 변형형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변호사로 근무하게 될 법전원생들에게 필요불급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서면 형식을 숙지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기록형 시험에서도 판례의 숙지가 결론을 도출하는데 핵심 관건이 되도록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천경훈 교수님께서 기록시험, 특히 민사법 기록형 시험의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한 패소하는 부분이 없게 하라"는 단서를 다는 바람에, 마치 판결서의 결론과 유사하도록 소송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일반적 소송실무와는 달라 실무에서 나쁜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 큰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변호사시험 초기에 기록형 시험을 출제하면서 '인위적 기록제조'에 경험이 있던 사법연수원 교수 인력이 출제진으로 투입되면서 끼쳤던 영향, 그리고 짧은 시험시간에 가급적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물어 큰 법역 안의 개별법률 영역의 학습을 골고루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현재 사법연수원에서도 법전원 출강지원을 계속 할지, 계속 한다면 출강지원 교육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재판실무교육을 법전원 자체적으로 실시할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 학교의 경우 사법연수원

의 출강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출강지원이 아직까지 재판연구원의 선발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법연수원 독자적으로 정책결정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여전히 출강지원의 확대를 요청하는 법전원도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전원협의회, 그리고 법원행정처 인사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실무강의의 콘텐츠가 현재 법전원생들의 수요 및 대부분의 장래 법조 직역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전원 출강 10년, 전국 법전원 출강 및 동시평가 6년을 맞이하여 진지한 성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연수생 교육 기능이 상실된 이후 사법연수원의 운영목표를 신입법관연수를 비롯한 법관연수와 그 인접 연수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이어서 법전원 출강지원 콘텐츠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연수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판결문 유사의 검토보고서 작성의 평가에서 벗어나, 항소이유서, 소송기록 검토 후 작성되는 쟁점보고서,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공판준비서면, 증거의견서의 제출 등 다양한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여 논리력과 추론력을 강화하는 평가 및 그러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확장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진들은 법전원협의회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와의 소통을 통해 변호사시험이 '판례암기식' 평가를 벗어날 방안을 모색하는데 충분한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제도의 중장기적 검토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CBT의 적극 찬성

우선 천경훈 교수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안해 주신 CBT의 도입에 적극 찬성입니다. 문서만 작성하는 수준의 컴퓨터라면 고성능,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으니 시험주관기관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2)에서 말씀드릴 사항에 해당하나, 만일 선택형(객관식) 시험과 사례형/기록형 시험 일정의 분리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사례형과 기록형, 특히 기록형 시험에서는 법조문과 종합법률정보 등 판례정보가 탑재된 컴퓨터를 제공하여, 시험의 주된 평가요소를 문서의 해석, 법률적 쟁점 파악, 적절한 판례 검색,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입법관 임용과정에서도 이러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택형(객관식) 시험과 사례형/기록형의 일정 분리

많은 법전원 학생들이 선택형(객관식) 시험과 사례형/기록형 시험을 함께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의 경우 변별력이 크지 않아, 결국 변시를 목전에 두고는 선택형(객관식) 시험공부에 충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학생들 커뮤니티에서도 ‘객관식 110개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선택형(객관식) 시험을 사례형/기록형과 분리하여 1~2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시한다면, 학생들로서는 시험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법조인으로서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높은 사례형/기록형 시험대비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예전 사법시험의 방식처럼 객관식과 서술형을 1/2차로 나누어 1차를 통과하여야만 2차를 볼 수 있던 방식은 현재의 법전원 교육구조와는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구술시험의 도입

현재 신입법관 임용과정에서는 구술시험의 비중이 높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수행하는 업무 중 어느 직역에서건 원활한 소통능력은 중요한 업무능력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과정에서 구술시험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주관부처인 법무부가 출제하되, 각 지방변호사협회와 협업하여 면접위원을 추천받아 구술시험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각 법전원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그리고 우리 법률문화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3

김민규 교육이사 (대한변호사협회)

토론 3

김민규 | 교육이사 (대한변호사협회)

- 헌신적인 노력으로 로스쿨 제도를 운영해오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하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천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제시하셨던 법전원을 통한 법학교육의 목적, 현행 변호사시험의 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 암기요구량 축소와 기본판례의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변호사시험 문항을 분석해보면 과거보다 지엽말단적인 판례보다는 기본적인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로스쿨 학생들 역시 기본적인 중요한 판례 위주로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만점의 90~95%를 득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70% 이하를 득점하면 충분하다는 점과 아무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판례검색이 손쉬워졌다고 하더라도 판례를 풍부하게 알고 있는 것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판례에서만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발제문 24쪽 도표 우측에 민법 표준판례 개수 추가

구분	과목명	요약서판례	최신판례	합계	표준판례
민사법	민법	1,121	74	1,195	830
	민사소송법	431	38	496	419
	상법	622	21	643	479
	민사법계			2,334	1,728
형사법	형법	2,828	144	2,972	543
	형사소송법	1,035	25	1,060	396
	형사법계			4,032	939
공 법	헌법	1,589	101	1,690	334
	행정법	606	45	651	459
	공 법 계			2,341	793
총 계				8,707	3,460

- 반복을 피하고자 새롭고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보다는 반복되더라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미 변호사시험은 그런 경향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이 아닌 논리를 묻는 문제 확대를 통하여 결론만 외운 사람과 그 결론의 논거를 이해한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 사례형에서 무리한 융합출제 지양, 쟁점발견형으로의 재전환, 기록형에서 쟁점 간소화 및 변호사 실무에 부합하는 서면 작성에도 동의합니다. 부수적으로 CBT의 도입에 찬성하며, 선택과목 이수제에도 동의합니다.
-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통과한 변호사라면 변호사 실무의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에서 변호사 실무는 가장 천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로스쿨에 교수를 파견하여 (민사, 형사)재판 실무, 검찰실무(1, 2) 과목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실무를 지도하며, 이것이 변호사시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년간 신규변호사들에게 아래의 과목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를 로스쿨 교육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에 교수를 파견하여 변호사실무(1, 2)라는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법조인의 자세 •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 법무검찰 및 행정 • 보전처분1, 2, 3, 4, 5, 6, 7 • 법률문장론 • 계약실무1, 2 • 손해배상1, 2, 3 • 소송절차일반 • 민사집행1, 2, 3, 4, 5, 6, 7, 8 • 증인신문기법 • 가사소송1, 2, 3 • 형사변호실무1, 2 • 개인파산 • 개인회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1, 2 • 노동소송1, 2 • 세무 및 조세쟁송실무1, 2 • 회사소송1, 2 • 헌법소송실무 • 행정쟁송실무 • 지식재산 • 공정거래 • 회사자문 • 의료소송 • 전자소송 • 법률사무소 운영 • 멘토링 프로그램
--	--

- 추가로 변호사시험 일정이 살인적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선택과목 이수제와 더불어 선택형 시험을 현행 법조윤리처럼 2학년 여름방학 내지 겨울방학에 P/F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로스쿨 3년 6개월 내지 4년제로 개편하고 변호사시험은 1학년에 법조윤리(P/F), 2학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선택형(P/F)을 응시하고 70% 미만 득점 시 유급하여 로스쿨 교육을 통하여 재도전, 3학년 마치고 사례형과 기록형 응시,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후 부담 없는 상태에서 실무수습 및 세무, 노동 등 자유롭고 실무적인 특성화 교육을 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 로스쿨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의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학 재단들은 로스쿨 정원을 모두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정원을 배정받아 약 100억 원이 넘는 적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균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일부 로스쿨의 인가반납이나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로스쿨들은 졸업시키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학생들을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무책임하게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였음에도 매년 2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10년 가까이 소모하면서 거액의 빚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과잉배출된 신규변호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처우를 감내하면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법원, 검찰, 변호사, 교수 할 것 없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권위는 처참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조유사직역 단체들은 자신들이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보다 뛰어나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반영되어 널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조유사직역은 지속적으로 변호사를 기존에 했던 업무영역에서 밀어내는데 성공하여,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 법조계는 늘 위기였지만 현재의 위기는 그 전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기성의 법조계 각 구성원은 각자의 이익과 입장만 주장하면서 분열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지혜를 모으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초법학연석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한 변호사시험 개선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에 공감하므로, 이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기초법학교육 관련 의견 1부. 끝.

[첨부자료] 기초법학 교육 관련 의견

- 기초법학 교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선택적 필수과목'으로 법정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 기초법학 교육이 평가요소로 반영되어야 함.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편(학점이수제 등)에 기초법학 과목도 포함되어야 함.

1. 기초법학 과목의 법정 필수과목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념으로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는 그러한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조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전문 기술’을 언급하며 법조 윤리, 법문서 작성 등 소위 실무기초 5과목만을 법정 필수과목으로 지정함.
- 지난 10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학의 교육이 점점 소외되고 있으므로, 기초법학 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의 교육과정 부분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
- 미래의 법률가들이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법철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법사상사, 인권법, 법인류학, 법정책학 등을 기초법학과목군으로 설정하고 그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필수적 과정으로 두어야 함.
- 즉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기초법학 과목을 법정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함.
- 어떠한 과목을 기초법학 과목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함.

2.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 기초법학 교육을 필수적이며 독립적 평가요소로 설정

-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변화의 유인을 제공함.
- 현재 평가기준 항목들에 기초법학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평가 주기가 진행될수록 그 비중이 축소되어 제3주기 평가에서는 평가요소에서 사라지고 단지 해석지침에만 언급되는 것에 그치고 말았음.
- 즉 제1주기 평가기준에서는 3. 교육과정 부문의 상세평가지표 3.1.1.1.2. 전공교과개설의 체계성(계열성)의 평가요소의 하나로 “기초법학 과목을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제시되었고, 제2주기 평가기준에서도 3. 교육과정 부문의 평가지표 3.1.2.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및 편제의 체계성 부문의 평가요소의 하나로 “기초법학 과목을 적절한 시점에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의 개설은 다양하다”라는 항목이 들어 있었음.
- 그러나 제3주기 평가기준에서는 4. 교육과정 부문 평가지표 4.2.1. 교육과정의 체계성의 평가요소

에 “법률기본과목 편성 및 개설의 적절성”을 말하고 있으나, “공법분야, 민사법 분야 형사법 분야 별 이론교과목, 연습 교과목 실무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설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의 개설은 다양하다”라고 하여 기초법학이 대한 언급이 아예 빠지게 되었음.

- 평가주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기준 설정에 기초법학 교육이 독립적이고 필수적인 평가지표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3.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 개편(학점이수제 등)에 기초법학 과목 포함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제도의 취지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전문 법률분야 선택과목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음.
- 법무부는 2018년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선택과목의 경우 시험에 의한 평가를 ‘학점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음.
- 한편 정부 수립 후 법조인 선발을 위한 고등고시와 사법시험의 역사에서 아래와 같이 법철학, 정치학 등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들이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왔는데,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법학이 선택과목 군에서 빠지게 되었음.¹⁾

연도	선택과목	비고
1949-1962 (고등고시령)	국제공법, 국제사법, 형사정책, 경제학, 재정학	1과목 선택
1963-1964 (사법시험령)	국사, 법제사, 법철학, 사회학, 사회정책, 국제사법, 국제법, 사회법, 행정학, 형사정책, 경제원론, 외국어	1과목 선택
1965-1972 (사법시험령)	제1선택군 : 국제법, 국제사법, 사회법, 형사정책 제2선택군 : 정치학, 경제원론, 심리학, 법철학 제3선택군 : 외국어 과목	3과목 선택
1973-1980 (사법시험령)	제1선택군 : 국제법, 국제사법, 사회법, 형사정책 제2선택군 :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법철학 제3선택군 : 외국어 과목	3과목 선택
1981-1998 (사법시험령)	제1선택군 : 국제법, 국제사법, 사회법, 형사정책,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법철학 제2선택군 : 외국어 과목	2과목 선택
1999-2001 (사법시험령)	제1선택군 :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형사정책, 법철학, 경영학, 행정학 제2선택군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제3선택군 : 외국어 과목	3과목 선택
2002-2003 (사법시험법)	제1선택군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제2선택군 : 외국어 과목	2과목 선택
2004-2017 (사법시험법)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1과목 선택

1) 김인재/홍석모, “전문법률교육의 강화를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1쪽. 사법시험 1차시험 선택과목의 변천

- 향후 변호사 시험 선택과목이 학점이수제로 바뀔 경우 기초법학 과목도 다른 선택과목 군과 같이 학점이수를 할 수 있는 선택과목 군에 포함되어야 함.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4

이가영 논설위원 (중앙일보)

토론 4

이가영 | 논설위원 (중앙일보)

1. 법전원의 도입을 두고선 너무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법전원 제도를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봤다. 일부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은 법전원의 단점 등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에 갖는 계층 사다리, 기회 균등의 가치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학비가 너무 많이 드는 법전원이 도입되면 결국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이들만 법조인으로 양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물론 지금의 법전원이 결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학비 부담이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걸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장단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즉 지금의 법전원 도입 이후 법전원 도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들었던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지는 교육기관과 사법 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본다.
2. 법전원 교육이나 시험의 문제점에 대한 천경훈 선생님의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법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건 아니지만 상당 기간 법조 출입을 하면서 최근 법전원의 교육 방식이나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전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무엇보다 법전원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변호사 시험제도와 변시의 변화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 법전원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입시 기관이거나 학원이 아니다. “법전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 평등 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법전원법 조항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 이런 거창한 이념을 잘 몰랐지만 결국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법전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을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법전원에선 변호사 시험 과목만 문전성시를 이룬다. 다른 과목은 파리 날린다. 그건 변시의 합격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현재 법전원 출신 중 50% 가량만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5회 이상 응시를 제한해 ‘오탈자’를 양성하는 문화도 반영된다. 법전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당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변시의 합격생 제한을 풀어야 한다. 상대 평가

가 아니라 절대 평가, 즉 어느 정도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증을 줘야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사법시험도 아니고 미국식의 변제도 아닌 짬뽕의 방법으로는 법전원 교육이 절대 정상화 될 수 없다.

진정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아무리 변호사 시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변호사 합격자숫자를 제한하는 식의 제도는 곤란하다. 혹 수준이 좀 미치지 못하는 변호사가 배출된다면 그 사람은 알아서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런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다.

3. 변제 재수생, 장수생들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변제는 더욱더 어려운 형태로 갈 것인데 법전원 출신들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의 시험 제도는 매우 작위적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걸르기 위한 시험이란 거다. 제대로 된 법률가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에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양식이 존재한다. 사례형과 기록형을 달리 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시험이 진정 법논리를 제대로 펼치는 이들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수천개의 사례를 암기, 이른바 달달달달 외워야 잘 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냥 외우기만 할거면 변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그런 법률가들을 양산한다면 새로운 법리의 구성, 다양한 요구의 반영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다. 이른바 민법, 상법, 형법, 또는 법철학의 대가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4. 결과적으로 일본식과 미국식의 짬뽕이 지금의 법전원과 변제 제도인데 법조 기자로 지켜본 것과 법전원 후배들에게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껏 내가 생각하는 걸 정리해 본 것이 위의 세가지 것들이다.

여기에 더해 실제 현장에서 본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 양성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한다. 현재는 사법 연수원 없이 3년의 교육시스템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변호사로 취업을 한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실력이 좋아서, 또는 운이 좋아서 검사로 직행할 수 있다. 최근 20여년간 사법시험에서 사법연수원 제도에서 그 이전과 달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판사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습일테다. 그러니 판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로클릭으로 가서 판사가 되는 것보다는 로스쿨과 변제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대형 로펌에 들어가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용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건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 판사 상당수가 이른바 메이저 로펌 출신이어서 전관 예우가 아닌 후관 예우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경향이 심화되는 건 다양성의 방해 요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3년만에 바로 검사가 될 수 있는 경우, 과거처럼 연수원 2년의 시기를 거치지 않아 실제로 검사 이후 실무나 사회적 경험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 같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5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

토론 5

이범준 | 사법전문기자 (경향신문)

1. 토론 개요 - 법조 관찰자이자 소비자 관점에서 질문

천경훈 서울대 교수님의 생생한 발제문을 읽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취재해온 법조인들 출신을 보니,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 고등고시 사법과, 조선변호사시험까지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던 과정도 취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선발시험 내용에 따라 법조인 성격도 달라진다는 발제자 설명에 깊이 공감합니다. 발제문 주제인 법학교육 정상화를 논의하려면 법률시장 상황인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함께 다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쟁점이 빙글빙글 순환하면서 논의가 헛돌기가 쉬워, 발제자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발제자의 논의 구조 안에서만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려 합니다. 다만 토론자 가운데 거의 유일한 법률소비자의 입장을 살려, 법률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 발제 이해 - 변호사시험을 바꿔야 법학교육 정상화

발제자는 변호사시험 방식을 바꿔야 법학교육이 정상화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상화란 교양과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기르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과거 사법시험을 폐지한 이유를 다시 보면, 교육과 실무의 단절, 법조인의 국제경쟁력과 창의력 부족, 고시낭인 양산, 법조인의 동류의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가운데 고시낭인이나 법조 폐쇄성과 같은 제도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함께 해결됐습니다. 남은 문제는 “교양과 소양이 있는 법조인을 어떻게 학교에서 기를 것인가”라는 실천 과제입니다. “교양과 소양은 신림동 고시촌이 아닌 대학원 교육으로 길러진다”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의 콘센서스, 즉 사회가 합의한 사실이자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 가운데, 발제자는 법조인 선발시험에 집중해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 첫째 질문 - 법률시장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발제자는 교육과 시험의 동조 현상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꼽으면서, 부정적인 면으로 시험 내용이 교양과 소양을 기르는데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법시험 시절에는 수업

따로, 시험 따로였지만, 지금은 수업과 시험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시험 형태를 바꾸면 교육도 나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고려할 문제는 법률시장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을 고용할 법무법인에서 지금보다 많은 판례 학습을 원할 경우, 시험과 취업이 분리되면서 결국 교육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잖은 현직 법조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문제점으로 법률지식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독학자인 예비시험 합격자들이 유명대학 로스쿨 졸업생보다 취업시장에서 선호됩니다. 현재 법률시장이 교양과 소양보다는 여전히 법률지식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4. 둘째 질문 - 학교는 새로운 교육을 할 준비가 됐는지

판례 암기식 변호사 시험이 송무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발제자는 지적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동의합니다. 송무 변호사가 되는 준비만 하다가 졸업하니, 송무 시장으로 졸업생이 몰리고 송무 변호사가 되기는 더욱 힘든 악순환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수학 기간이 짧은데 다른 것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초적인 실체법과 절차법은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늘어난다 해도 송무 위주로 교육한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사내 변호사, 자문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법과대학, 사법시험, 연수원까지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송무 변호사 이외의 직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을 고용했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분쟁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송무 이외 분야를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셋째 질문 - 의료와 법조 분야 교육기간 왜 다른지

이제부터 의사의 중요한 자질로 소통능력, 판단력, 공감능력 등을 의료계는 꼽습니다. 상처를 봉합하는 손기술은 스테이플러로 대체되고, 환자 진단에는 IBM 왓슨을 비롯한 인공지능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사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의사국가시험에 붙은 사람 중에 80%가량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칩니다. 의료시장이 그렇게 요구하고 자리를 잡아서라고 합니다. 똑같이 발제자는 앞으로 변호사의 진정한 실무능력은 소통능력, 판단력, 공감능력 등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판례검색 등 리서치 기능을 가져갈수록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고려해도 3년이라는 교육기간은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법률시장에 있습니다. 직업교육이기도 한 법학교육은 법률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교양과 소양을 쌓는 법학교육이 되려면 교육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



종합토론

토론 6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토론 6

이용우 | 변호사 (참여연대)

1.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도입 경과 및 취지

- 1995년 이후 기존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대안으로 논의되었음
- 기존 사법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가 법학교육과의 괴리로 인한 법과대학의 고시학원화,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 법조인 양성의 지역불균형, 이른바 ‘고시낭인’,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됨
- 이를 위해 다양한 전공자들의 법전원 입학과 3년 동안의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 변호사 자격시험화, 사법연수원 폐지 및 직역별 연수기관 담당 등의 논의가 있었음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으로 여러 안을 논의하다 법전원 도입으로 정하고 정부에 건의함
-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사개위 건의에 따라 법전원 도입 추진
- 이후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전원법) 제정, 2009. 5. 변호사시험법 제정
- 법전원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제2조),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

여 시행되어야 한다”(제2조)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 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고 명시하고 있음.

- 특히, 과거 사개위는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사법개혁 건의문)고 하였음

2. 법전원 및 변호사시험 등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변호사시험의 성격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경쟁시험화
-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테스트. 과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서의 평가 혼용. 이는 3년 동안의 법전원 교육과정을 양과 질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음.
- 시험과목 및 범위의 문제 : 법전원에서 교육하고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할 기본적 사항들이인지가 의문임. 지나치게 광범위함.
- 시험유형의 문제 :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 각각의 평가 목표가 불분명하고 사실상 판례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렴하는 문제. 3가지 유형의 평가가 과도한 수험부담과 법전원 교육의 왜곡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음.
- 시험내용의 문제 : 지나치게 판례 결론 위주의 테스트. 다양한 논거나 이론을 확인하지 않음.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논점, 기록 등을 요구함.
- 시험수준의 문제 : 난이도 관리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의문
- 시험관리의 문제 : 출제 및 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문제
- 이와 같은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법전원 운영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함
- 특성화, 전문화, 다양화 대신 변호사시험에 집중하는 경향
-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비변시과목 소외, 선택과목 편중 등
-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 퇴색

3. 개선방안

- 발제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함
-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제도의 마련과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시험 범위와 유형의 조정, 시험 내용의 변화 검토 필요
- 각 과목별 시험 포함 범위를 축소·명확히 하고, 판례 위주 테스트에서 논거 확인 및 쟁점 도출 테스트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록형 시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실무연수와 연동하여 검토 필요.
- 선택과목 이수제 도입 필요
- 한편, 변호사시험 자체의 개선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법전원 도입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종합토론

토론 7

강슬이 학생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토론 7

강술이 | 학생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1. 들어가며

변호사시험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학습의 문제점은 발제문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출제방식의 한계, 지나치게 판례에 경도된 문제의 출제, 피상적 암기 위주의 출제, 시험 방식의 문제, 이에 따른 교육 현장에의 부정적 영향, 송무 집중 현상의 강화로 대표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실제로 (1)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 (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필자 및 필자의 지인들 경험을 토대로 에세이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에세이 형식을 빌려 아래의 사안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당해 변호사시험 응시생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A

A는 N전자 해외 영업팀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 A는 학부때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없었지만, 글로벌 회사인 N전자에 다니면서 기업 법무, 국제 조세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심이 생겨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최신 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들뿐이다. 이미 30을 훌쩍 넘긴 A로서는 위축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20대 후반도 늙은이 취급” 로스쿨 합격자, 31세 이하가 91%, 중앙일보. 2021.3.28.]
[입학생 35세 이상, 지방 12%... 서울 단 1%, 법률저널, 2020.9.8.]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카페에 가입한 A는 카페 글들을 읽으며 ‘학(학점), 토(토익), 리트(리트)에 따라 정량 줄세우기를 하면 과연 자신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과연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 학부의 졸업예정생들은, 법학과가 폐지된 이래로 많은 대학에서 개설한 법학교양과목을 이수하고, 동아리로 ‘OO 법학회’ 활동을 하며 진학을 준비중 이라고 한다. 학점이 낮은 A는, ‘LEET 고득점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컨설팅을 책임진다’고 하며, 400만원의 상품을 판매하는 유명 학원의 선전을 보고 해당 상품의 수강권을 구매했다. 변호사 시험 관련 정보를 접할수록 A는 본래 자신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취지를 잊어버리게 되어 기업법무나 국제조세를 특성화를 할 수 있는 대학, 그런 교수님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기 보다는 합격률이 높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히게 된다. 전문 분야를 특성화시키기는 고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도 불투명이라는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A는 정말이지 몰랐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좋은 소위 인서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하기 위해 LEET 시험을 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카페의 글에, 그는 당해연도 입시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예감을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B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B는 지원이유로 “한중간 법적교량을 꿈꾼다.”고 기재하였다. B는 입학 전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국제 통상법’ ‘중국법’ ‘비교민사소송법 세미나’ 등 관심있는 법과목을 수강하여 전문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었다. B가 진학하는 학교는 외국 여러 대학 로스쿨들과 교환학생이 가능하니 이 기회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 야심찬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B는 입학과 동시에 졸업까지 들어야 하는 필수 수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동기들은 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과목들, 소위 수험적합적인 과목들만 골라서 넣었고, 이것만으로도 한 학기 수강학점이 18학점에 달한다. B는 선배들과 대화에서 ‘욕심을 내서 변호사시험과 관련 없는 법 과목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핸드북(변호사 시험을 최종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요약서)를 1학년부터 보라는 이야기, 판례 비평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판결 요지가 헛갈려서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B가 듣고 싶었던 법과목들은 최소 수강인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강되고 만다.

법률정보조사, 법률문서작성, 모의재판 등의 과목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서 보통 학생들과 같이 B는 해당 과목들을 위해서는 pass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한다.

2학년 겨울방학에 나간 실무수습에서 B는 ‘계약서 검토한 후 소장 작성’, ‘리서치를 통한 자문 답변서 작성’을 과제로 부여받았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기업 자문에 대한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이내 그 고민은 사라지게 된다. 겨울방학 이후로는 누가 뭐래도 이제 B는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수험생이기 때문이다.

(3) 변호사시험 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C

변호사시험을 막 마친 선배들의 간담회와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들은 진정한 수험생으로 거듭난다. 2학년 겨울방학의 변호사시험 대비 특강 수강과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대비를 위해 60만 원 정도 되는 연도별 기출문제집 구매는 필수적이다.

변호사 시험용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 선배들은 조언한다.

“문제의 제기는 주어진 문제를 축약해서 옮기고, 형사법 검토는 구체적 타당성/법적 안정성 둘 중 하나로 대충 쓰면 된다. 민법은 학설이나 검토를 묻는 문제는 거의 없으니 판례 문구를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라. 최신판례는 금과옥조다. 중요 판례 여부를 떠나 무조건 여러번 눈에 바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선택법은 여름 이후에 시작해도 된다는 선배들의 말과, 유명 강사들의 요약본을 믿으며 불안하지만 선택법은 잠시 미뤄둔다. 선택법을 제외하고도 채워야 할 부분은 너무도 많다. 같은 과목일지라도 선택형 시험, 사례형 시험, 기록형 시험의 대비 방식은 꽤나 다르다. 거기다 매 시험 중첩되는 범위를 줄이려는 시험 주최측 태도 때문에 최신판례는 새로운 과목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도가 늘어났다. 참고로, B가 구매한 민사법 5개년 최신판례집은 500페이지에 달한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며 5일 간(중간에 하루 휴식일 포함) 모의시험을 보는 날에는 손목이 빠지는 경험을 했다. 선배들이 왜 그렇게 손목보호대를 하고 다녔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120분에 200점짜리 답안을 작성하는데, 작은 문제들까지 합하면 문제수는 많으면 14문제 까지도 된다. 답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시험 시작과 동시에 답안지 줄을 나눈다. 10점짜리에는 13줄과 6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지문과 문제를 읽는 시간까지 합하면 할애하는 시간은 더 줄어들어야 한다. 보통 빈출 문제들의 답안은 머리보다 손끝에서 반사적으로 써지기 시작해야, 시간을 맞춰 답안지를 끝까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도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생겨난다. “법학전문대학원 가면, 다 변호사 되는 것 아니야? 자격시험이라며?”라는 주위 친구들의 물정 모르는 말에 C는 애가 탄다.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해야 할텐데, 오탈 제한 때문이라도 지금이라도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를 포기해야 하나?’,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C는 휴학서류를 만지작 거린다.

2.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배경, 변천 과정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보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2021년, 제 주변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하는 사람들,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막 변호사 시험을 마친 10기 학생들의 상황과 그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과정은 최근 **정량적인 평가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학점, 토익, LEET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법학전문대학원 내 구성원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합격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것에 열중하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생의 학점과 LEET,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각 파트에 저마다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부에 입학한 후 어린 나이부터 영어성적 및 학점을 관리하고, LEET 학원을 다니거나 스터디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해야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잘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대학들이 법학과를 폐지하고 신설한 학과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단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곤 합니다. 이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 방식은 사회에서 전문성을 갖추거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을 막는 장벽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그리고 그 합격률이 대외적으로 공표됨으로 인해) 인서울 법학전문대학원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특성화 교육제도는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미만이었던 7회 변호사시험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률(특히 초시합격률) 중요성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대학교 입시 때 일어나던 대학별 서열화가 법전원에서도 이뤄지게 된 큰 원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및 특성화 교육 유명무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각 '환경, 부동산 관련법, 과학기술법, 의생명과학법, IT법, 물류 및 지적재산법' 특성화 분야를 갖고 있는데,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 각 특성화 분야에 대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화분야는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생이 입시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도입 초기와는 달리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하므로, 학생들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인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여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 대비과목>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과목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수험 적합한 과목들을 늘리고, 해당 과목을 '필수이수과목'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꼭 필수이수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과목들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목들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 **법률정보조사, 법률문서작성, 리걸클리닉 등 실무과목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법률 및 주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개별구체적 사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판례, 논문, 자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정보조사와 같은 법률 정보를 전문적으로 학습시키는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이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비록 다수의 견해와 다를지라도 자신만의 논리를 세워 법률 서면을 쓰는 것은 변호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이는 법률문서작성 수업을 통해 함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의뢰인들과 상담하는 능력,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또한 법률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리걸 클리닉으로 법률 현장을 미리 체험해보고,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는 선배 법조인들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실무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과목 수강에 쏟는 힘과 노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 **실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들이 부재하거나, 폐강되고 있습니다.**

실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판례 비평 및 검토 수업은 변호사 시험 준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행 변호사시험 하에서 학생들은 판례의 중요 키워드는 반복하여 암기한 후, 시험 때 사실관계 변형 없는 문제를 외운 그대로 포섭하는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판례는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판례를 그대로 옮겨 포섭할 수 있는 판례와 동일한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사안과 판례 사실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판례의 유사한 부분은 그대로 포섭하되, 다른 부분은 판례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수업들이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판례의 무비판적 암기만을 강요한) 현행 변호사시험제도가 초래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조 직역이 새롭게 확장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는 전문화 과목들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의 시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습과정 또한 학부 법학과의 커리큘럼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시기부터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의 도래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법률서비스를 고민하는 수업들이 개설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3) 변호사시험

● 선택형 시험의 경우, 법조윤리 시험처럼 변호사시험과 그 시험 시기를 달리하여야 합니다.

많은 판례들의 내용 파악하고, 중요 법률 조문 암기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하는 선택형 시험과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한 후 주어진 법전을 참조하여 답안지에 현출해내는 사례형, 기록형 시험은 같은 과목일지라도 시험 준비방식이 상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시 매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시험 스케줄을 소화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입니다.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하루 평균 시험을 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체력적 부담감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선택형 시험의 경우, 그 시험 시기를 달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을 마친 이후 먼저 시험을 보고, 나중에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 점수에 합산하는 방식 등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면 모든 유형의 시험을 준비해야만 하는 변호사 시험의 부담을 나눌 수 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형 시험 점수에 따라 사례형, 기록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사례형 시험의 경우, 문제의 문항 수를 줄이고, 충분히 검토하고 논증할 수 있는 시험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소문항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결과 작은 문제들은 쟁점 제시형 문제와 같이 되어서, 결국 '누가 판례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점수가 결정됩니다. 이는 선택형 시험을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시험 방식으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고, 주어진 지문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능력, 추출한 쟁점을 정확하게 논증하거나 검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의 시험으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선택법 시험의 경우, 그 평가 방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은 다른 변호사 시험 과목의 부담으로 인해 선택법은 아주 적은 시간만 투자하여 (특강 및 유명 강사들의 핸드북 내지 요약본에 의존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법은 과락만 면한다.'라는 수험전략을 갖고 있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과목을 단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고 선택법 시험과목을 응시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것이 현행 제도 하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택법의 경우 변호사시험평가에서 제외하고,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로 변경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필자 또한 이에 강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학기간 중 특정과목(군)에 대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졸업 또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한다면 해당 과목에 대한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각 학교들이 갖고 있는 특성화 교육 분야의 발전도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변호사시험 출제 및 수험장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3년의 기간을 준비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1년에 시험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이 시험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금년 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시험 출제 과정의 문제(공법 기록형), 변호사 시험장 관리 소홀(법전 밀줄 사건, 1분 조기종료 후 매뉴얼 부재로 수험생들을 시험장에서 기약없이 대기시킨 후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포기시킨 사건 등)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확산이 빠른 시대인만큼 특정 고사장에서 겪은 불공정함은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며, 5일간 시험을 쳐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심적 불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능에 준하는 시험 문제의 보안 유지, 각 고사장별 형평성 유지,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매뉴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합격 인원을 미리 공표하여, 수험생들이 예측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 합격발표 전에 합격자 인원이 결정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매년 변호사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변호사협회와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협회와의 기싸움이 이뤄져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긴장감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은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변호사협회와의 갈등 관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물론 제가 드리는 제안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변경에 대한 법무부 및 법전협의 청사진 제시’ ‘변호사시험제도 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변화’라는 단계로 순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는 주체가 되는 법무부는, 단기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변호사시험 제도의 개편이 학생들에게 큰 피로감을 줌과 동시에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변호사시험 청사진에 '4차 산업혁명'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기존의 법조 직역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법조 직역을 개척해나가는 존재로 사회에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변호사 시험 자체가 송무 위주로 설계된 만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방식도 송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 블록체인, 1인 전문가, 소셜 인플루언서, NFT, 암호화폐' 등 기존에 없었던 산업분야가 생겨남에 따라 법률가들이 전문화하는 분야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률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소송·중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역할이었다면, 현재는 새로 생겨난 분야에 적용될 법률을 분석하고, 법적 이슈를 미리 분석하고 알려주는 위기 관리자의 역할로서 변호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하여 법적 분쟁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 사회 변화에 따른 입법 지원을 하는 것도 법률가의 주요 역할로 대두될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는 변화하는 시기에 법조 직역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상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직역 확장의 전선에는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은 역량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제도 및 변호사 시험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8

이경주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8

이경주 |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로펌의 기업자문 변호사 로스쿨교수로서 각각 10년이상 근무한 경험, 한국 연수원 및 미국에서의 자격증 취득 경험 그리고 보직을 하면서 심화된 현장감 등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망라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출제담당기구의 위탁, 시험방식의 개선(CBT), 출제방식의 변화(암기량 축소, 기본판례의 활용, 문제풀이의 구성 및 관리, 중요쟁점에 대한 반복 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제방식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선택형 시험(새로운 문제 유형 개발, 논리를 묻기), 사례형(쟁점 및 소문항의 축소, 쟁점 발견형으로 전환, 무리한 융합출제 지양), 기록형(비중과 형식의 재검토, 쟁점 간소화, 변호사 실무에 부합하는 서면작성)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다 공감하며 또한 개선과 관련된 나름의 원칙이 잘 제시었다고 생각합니다.

천교수님의 이러한 발표내용의 근간에는 변호사시험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본인식이 깔려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정상화되어야만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도입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러한 근본인식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하며, 몇가지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제방식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1차에서 평가했던 선택형, 사법시험 2차에서 평가했던 사례형, 사법연수원 1년차 시험에서 평가했던 기록형을 한꺼번에 나눌 동안 치르는 형태” 가 된 데에는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무리한 위상설정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실무와 이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로 현실화하고 졸업 후에 변호사 연수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상을 현실화한다는 의미는 “기초실력을 다져주는” 그래서 졸업 후 실무능력을 오히려 배가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제방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출제의 위탁 문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자격시험 등은 위탁관리 중이나 변호사시험만은 아직 제도초기여서 그런지 주관부서인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변호사 자격부여에 적합한 변시난이도 및 내용 등을 확보할 필요성 있는데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문항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항에 대한 평가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출제위원에게 오답 등 관련 주의사항 위주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이도 조정 및 변시관리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험(LEET, 모의시험)과 연구개발능력(모의시험 문항개발 등)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제는 변호사시험 출제업무를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와 관련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바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위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로는 협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 시험위원 위촉시(변호사법 13조) 법전협과 협의하도록 한다든지 법전협에 검토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법령 개정 공감대 형성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변호사법 제15조4)이기도 하므로 변시관리위원회에서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단계에서는 선택형 시험만을 위탁받아 우선 실시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사례형 시험과 분리시행 통한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전협은 출제위탁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방식의 개선을 개선해야 하며 그 한 방안으로 CBT(Computer Based Test)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을 수기로 실시하여 글자체에 따른 공정성 논란, 손글씨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학생들의 불필요한 고통, 채점위원들의 내용식별 곤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변호사시험 및 학교시험에 컨닝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오작동에 따른 위험 및 재원 마련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법무부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법무부도 2009년에 논의한 바 있으며, 2018년도에도 CBT와 관련한 컨설팅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법무부 『노트북 이용 답안작성 컨설팅 용역 사업완료 보고서』 2018.12.14.)

우선 1단계로 선택형 시험에 CBT를 도입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로스쿨과 법전협은 교내 시험 및 모의고사에서 시범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사례형, 기록형에 CBT를 도입하여 보는데,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우선은 ‘수동식 CBT’ 즉 인터넷 안되는 워드프로세서 기능의 컴퓨터를 대여하고, 고사장 내 출력까지 하도록 하여 보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서 USB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상 제출하는 CBT를 도입하여 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15억 정도 예산 소요 예상)

법무부도 CBT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5~26년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더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CBT를 변호사시험법상의 필기시험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필기’라는 말을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법령의 개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시기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1월에 시험을 보고 4월 하순에 합격자 발표가 나다 보니 합격자의 경우도 실무에 뛰어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불합격자의 경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CBT의 도입에 의해 촉진될 수 있으며, 집중채점제 등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시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